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24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 어기구 · 이원택 · 이연희

황정아 · 주철현 · 박 정

김정호・황 희・이정문

강유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 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농어업인 재 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% 수준이고, 농어업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「농어업재해보험 법」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, 가입률은 50%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 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 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,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 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 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 는 것임(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라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야 한다.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 출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~ ⑧	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~ ⑧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
	항에 따라 농가와 어가에 대한
	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
	경우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
	고려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
	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가
	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
	<u>농어업재해보험이 출시되지 아</u>
	<u>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
	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
	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보
	<u>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</u>
	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
	<u>하여야 한다.</u>